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회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481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이달희 · 강선영 · 안철수
강명구 · 서천호 · 김종양
박형수 · 박충권 · 김예지
김정재 · 박상웅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LNG 민간 직수입사가 2024년 기준 25개사로 늘고 민간의 전체 가스 수입 비중이 26%까지 확대되고 있음. 가스배관시설은 공공성이 강하고 사실상 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기반시설임에도, 배관시설이 용료 산정기준과 관설치 비용 부담기준이 충분히 투명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특정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거나, 공동이용 확대와 미공급지역 공급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적절히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배관시설사업에서 발생한 초과 회수분을 배관 확충 · 노후관 교체 ·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환류시키는 장치와 관설치 비용의 공정한 부담기준, 관련 회계의 구분경리 및 정보공개 의무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실질화하는 한편, 배관

시설이용료의 산정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관시설사업에서 적정 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초과하여 회수된 금액을 배관설치·확장·개량 및 안전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설치 비용 부담의 공정성과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가스배관위원회가 배관시설이용료 산정 기준, 적정투자보수 기준, 초과회수액의 산정 및 사용계획, 관설치 비용의 부담 및 지원, 회계 구분경리와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9조의11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나. 가스배관위원회 재정 대상에 기존의 배관시설이용료 및 이용조건 뿐 아니라 관설치 비용의 부담, 접속설비 설치·증설 비용, 초과회수액의 산정 또는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동이용 관련 분쟁을 보다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2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신설).

다.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배관시설이용료를 효율적인 원가, 적정투자보수, 가스배관시설의 설치·확장·개량·보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접속·증설 제한을 금지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가스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4 신설).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배관시설사업 관련 수입·비용·자산·감가상각 및 적정투자보수를 기초로 초과회수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그 초과회수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가스배관시설의 설치·확장·개량, 공동이용을 위한 연결관·분기관 설치, 노후배관 교체,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공급확충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9조의15 신설).

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또는 새로운 수요처 연결에 필요한 연결관·분기관·정압설비 등의 설치 또는 증설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 공동이용 편익, 공공성 및 사업자의 설비확충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이용자 또는 신규 수요처에 과도한 관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공익성이 큰 지역이나 공동이용 촉진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초과회수액을 활용한 비용지원 또는 비용경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9조의16 신설).

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배관시설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구분경리 의무를 부과하고, 수입·비용·투자·감가상각·자금운용 내역 등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가스배관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관시설이용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공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7 신설).

사. 산업통상부장관이 배관시설이용료 산정원칙, 초과회수액 사용계획, 회계 구분경리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 초과회수액 사용계획 조정 또는 관설치 비용 재배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8 신설).

아.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 거짓 자료 제출, 초과회수액 사용계획 관련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함(안 제53조의4 및 제54조의2 신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682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1제1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9조의14에 따른 배관시설이용료 산정기준 및 적정투자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제39조의15에 따른 초과회수액의 산정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7. 제39조의16에 따른 관설치 비용의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39조의17에 따른 회계의 구분경리,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제39조의1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료, 관설치 비용의 부담, 접속설비의 설치·증설 비용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 1의2. 제39조의15에 따른 초과회수액의 산정 또는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14(배관시설이용료의 산정원칙)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배관시설이용료를 효율적인 원가, 적정투자보수 및 가스배관시설의 설치·확장·개량·보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은 특정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이용에 필요한 접속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배관시설이용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관시설이용료의 산정기준, 적정투자보수의 산정방법 및 비용 반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관시설이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5(초과회수액의 산정 및 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시설사업과 관련한 수입, 비용, 자산, 감가상각 및 적정투자보수를 기초로 초과회수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초과회수액”이란 배관시설사업과 관련한 수입 중 효율적인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를 초과하여 회수된 금액을 말한다.

③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초과회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

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가스배관시설의 설치·확장 및 개량
2. 공동이용을 위한 연결관, 분기관 및 부속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
3. 노후배관의 교체 및 안전성 강화
4.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5. 그 밖에 공동이용 촉진과 사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초 제3항에 따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집행실적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용계획 또는 집행실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변경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과회수액의 산정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6(관설치 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또는 새로운 수요처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 연결관, 분기관, 정압설비, 계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공동이용으로 인한 편익, 공공성 및 사업자의 설비

확충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②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이용을 신청한 자 또는 새로운 수요처에게 과도한 관설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성은 낮으나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공동이용 촉진에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제39조의15에 따른 초과회수액을 활용한 비용지원 또는 비용경감을 명할 수 있다.

④ 관설치 비용의 분담기준, 부담상한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7(회계의 구분경리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배관시설사업에 관한 회계를 그 밖의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사업의 수입, 비용, 투자, 감가상각, 차입 및 자금운용 내역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6까지에 따른 심의 또는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그 이용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배관시설이용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항 중 필요한 내용을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18(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9조의15제4항에 따른 사용계획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 초과회수액 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관설치비용의 재배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 중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4”로 한다.

제53조의4 및 제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벌칙) 제39조의18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의2(과태료) ① 제39조의1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9조의15제4항에 따른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회수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관시설이용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9조의14에 따른 산정원칙을 반영하여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21682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p> <p>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p> <p>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 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 이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21682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p> <p>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p> <p>①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제39조의14에 따른 배관시설 이용료 산정기준 및 적정투자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u></p> <p>6. <u>제39조의15에 따른 초과회수액의 산정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u></p> <p>7. <u>제39조의16에 따른 관설치비용의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8. <u>제39조의17에 따른 회계의 구분경리,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u></p> |

<신 설>

제39조의14(배관시설이용료의 산정원칙)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배관시설이용료를 효율적인 원가, 적정투자보수 및 가스배관시설의 설치·확장·개량·보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은 특정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이용에 필요한 접속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배관시설이용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관시설이용료의 산정기준, 적정투자보수의 산정방법 및 비용 반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관시설이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

<신 설>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5(초과회수액의 산정 및 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시설사업과 관련한 수입, 비용, 자산, 감가상각 및 적정 투자보수를 기초로 초과회수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초과회수액”이란 배관시설사업과 관련한 수입 중 효율적인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를 초과하여 회수된 금액을 말한다.

③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초과회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가스배관시설의 설치·확장 및 개량
2. 공동이용을 위한 연결관, 분기관 및 부속설비의 설치 또

는 증설

3. 노후배관의 교체 및 안전성 강화

4.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5. 그 밖에 공동이용 촉진과 사업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초 제3항에 따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집행실적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용계획 또는 집행실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변경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과회수액의 산정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16(관설치 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또는 새로운 수요처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 연결관, 분기관, 정압설비, 계량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공동이용으로 인한 편익, 공공성 및 사업자의 설비확충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이용을 신청한 자 또는 새로운 수요처에게 과도한 관설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배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성은 낮으나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공동이용 촉진에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제 39조의15에 따른 초과회수액을 활용한 비용지원 또는 비용경감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관설치 비용의 분담기준, 부담상한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7(회계의 구분경리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배관시설사업에 관한 회계를 그 밖의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사업의 수입, 비용, 투자, 감가상각, 차입 및 자금운용 내역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6까지에 따른 심의 또는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그 이용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신 설>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배관시설 이용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항 중 필요한 내용을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18(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9조의15 제4항에 따른 사용계획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 초과회수액 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관설치 비용의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9조의15제4항에 따른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